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는 사업 중단,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67호, 2020. 1. 21. 공포, 7. 1. 시행)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(안 제2조제4호)

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강사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생업 목적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.

나.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(안 제73조의

5 신설)

- 1)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.
- 2)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,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하며, 지역가입자가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.

다. 국민연금기금의 관리·운용 방법 확대(안 제74조제1항제8호 신설)

국민연금기금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27. ~ 5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“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”을 각각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73조의2의 제목 “(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)”을 “(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)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3의 제목 “(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”을 “(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4를 제5장의 제73조의6으로 하고,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)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.

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, 국민의 재산·소득 분포 현황,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.

제73조의5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

①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.

④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의6(중전의 제73조의4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0조의4”를 “법 제100조의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100조의4”를 “법 제100조의5”로, “고지·징수하여야”를 “고지·징수해야”로 한다.

제7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

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”를
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 중 “법
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”를 “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
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4호의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(재임용되
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「국민연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 자. 다만,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 함된다.	4.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<u>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</u>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고등 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	가. <u>3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나. <u>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</u>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 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	나. <u>3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제73조의2(<u>연금보험료의 지원대</u>	제73조의2(<u>사업장가입자에 대한</u>

상) ① ~ ⑥ (생략)

제73조의3(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 ① ~ ⑥
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3(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)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.

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, 국민의 재산·소득 분포 현황,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.

제73조의5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)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

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.

④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

제73조의4(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)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·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74조(기금의 운용사업 등)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제11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
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의6(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) ① ----- 법 제100조의5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법 제100조의5-----

-- 고지·징수해야 -----
-----.

제74조(기금의 운용사업 등) ① 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
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
외국 금융회사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
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(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3의2. <u>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</u>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. ~ 7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<u>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</u>----- ----- 4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04